#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이하 "대상단체"라 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 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의사회 등)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제1호의 대상단체(이하 "단체"라 합니다)에 소속한 주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연생보험인 경우 주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형 및 가족형의 경우 주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보험회사(이하 “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단체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단체의 소속원이 자동이체가입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납입가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통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 하였을 때
2. 계약자가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에서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이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